

“다시 뛰는 송파! 창의와 혁신의 구정”



송 파 구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내 정차질서문란행위 자제 협조 요청

1.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구 관내 버스전용차로 내 정류소에 전세버스(회사, 공공기관, 통근버스)가 노선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·하차 하는 등의 지속적인 【정류소 내 정차질서문란행위】로 인해 노선버스의 정상적인 운행 및 노선버스 이용객의 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3. 전세버스 등이 노선 버스정류소에 잠시 정차하여 이용객들을 승·하차 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6조를 위반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리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특히 출·퇴근 시간에 【정류소 내 정차질서문란행위】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전세버스의 편의 등을 이유로 정류소 정차 및 승객 승·하차를 용인 또는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정류소 정차질서문란행위 처분 근거 1부. 끝.

송 파 구

수신자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귀하,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귀하



주무관 김상배 대중교통팀장 이대산 도시교통과장 2026. 9. 15.
협조자 마승호

시행 도시교통과-115792 (2026. 9. 15.) 접수

우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율림픽로 326, (잠실동) 송파구청 6층 도시교통과(대중교통팀) (신천동) / <http://www.songpa.go.kr>

전화번호 02-2147-3151 팩스번호 02-2147-3886 / repentall@songpa.go.kr / 대국민 공개

□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단속(처분청) : 교통지도과, 자치구(자치구)

○ 관련 법령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(훈령·예규 등)													
○ 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) ③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·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2. 5. 23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4. 5. 21., 2015. 1. 6., 2017. 3. 21., 2017. 10. 24., 2018. 8. 14.> ○ 제26조(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)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28., 2017. 10. 24., 2019. 8. 27.> 9.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○ 제85조(면허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터미널사업·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)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·허가·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다	○ 제43조(사업면허·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)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1. 27.> 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0. 4. 14.> 사업면허취소·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(제43조제1항 관련) 2. 개별기준 가.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<table><tr><th rowspan="2">위반내용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<th colspan="3">처분내용</th></tr><tr><th>1차 위반</th><th>2차 위반</th><th>3차 이상 위반</th></tr><tr><td>26.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</td><td>법 제85조 제1항 제21호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위반내용	근거 법조문	처분내용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26.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85조 제1항 제21호				○ 제44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)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09. 12. 2., 2012. 11. 23., 2014. 7. 29., 2014. 12. 5., 2016. 1. 6., 2018. 2. 12., 2019. 12. 26.> [별표 4] <개정 2018. 2. 12.>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(제44조 관련) 1.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. 일반적인 준수사항 6)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, 이를 항시 지도·감독해야 한다. 가)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
위반내용	근거 법조문			처분내용							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										
26.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85조 제1항 제21호														

만, 제5호·제8호·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2. 2. 1., 2012. 5. 23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4. 1. 28., 2014. 5. 21., 2015. 1. 6., 2017. 3. 21., 2017. 10. 24., 2018. 8. 14., 2018. 9. 18., 2020. 6. 9.>

21.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

○ 제88조(과징금 처분)
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1., 2013. 3. 23.>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제94조(과태료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4.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

마. 성류소에서 주자 또는 정차 절차를 문란하게 한 경우	운행	운행
	정지	정지
	(5일)	(10일)

○ 제46조(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)
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09. 11. 27.>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, 사업지역의 특수성,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 3. 23.>

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[별표 5]

<개정 2020. 4. 14.>

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

(제46조제1항 관련)

1.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(단위: 만원)

위반내용	관계법조문	위반횟수	과징금의 액수							
			여객자동차운송사업							자동차대여
			시내버스	시외버스	일반택	개편택	전세버스	특수여객	수요응	

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
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[별표 6]

<개정 2020. 4. 14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9조 관련)

2. 가벌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다.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 반한 경우				
1)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 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을 위반한 경우	법 제94 조제3 항제4 호	50	50	50
2) 1)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94 조제3 항제4 호	10	10	10